



소매업주를 위한 장애자용 시설에 관한 안내서

아래의 내용은 복권 상품을 취급하고 계시는 소매업주에게 워싱턴주와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안내서입니다.

소매업주로서 복권국의 서류, (Washington Lottery Accessibility Affidavit)를 작성하심으로 승인을 받았다고 단정지으시거나 혹은 복권 판매 허가증을 받으셨다고 해서 연방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허가를 얻으신 것으로 단정짓지 마시고 아래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 주차공간 - 만일 자동차를 주차시킬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25대당 1대의 비율로 적어도 한곳은 장애자용으로 마련하셔야 합니다.
 - 적어도 한곳은 장애자용 밴이 주차할수 있는 공간으로 8 피트의 폭과 98인치의 높이(Clearance, 건물과 구조물사이 공간)와 8 인치의 통로를 제공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8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있는 경우 8대 주차 공간당 적어도 1대의 주차공간이 장애자용으로 마련되 어야 합니다.
 - 그밖의 다른 장애자용 주차 공간은 8 피트의 폭과 5 피트 정도의 통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주차장의 통로는 업소로 통하는길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 반드시 장애인 주차 표시판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 표시판을 푸른색 바탕의 국제 규격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표시판은 48인치에서 80인치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옥외의 연결 도로

-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바닥은 바닥에 구멍이 없으며 미끄럽지 않고 단단해야 합니다.
- 주차장에서 출입구사이의 통로의 폭은 적어도 44 인치여야 합니다.
-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는 계단이 없어야 합니다.
- 주차장에서 출입구사이의 도로에 언덕이나 가장자리의 경사면은 1:12 (언덕이 1인치 높이인 경우 12인치의 바닥이 이어져서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함)이하 이어야 합니다.
 - 주차장에서 출입구사이의 도로의 언덕은 미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 주차장에서 출입구사이의 도로의 각각의 언덕마다 위부분부터 바닥까지의 길이가 30피트 이어야 하며 이 경우 언덕에서 다음언덕 사이에 5피트의 평평한 바닥(Landing)이 있어야 합니다.
 - Landing사이의 언덕의 높이는 30인치 이상이면 않습니다.
 - 만일 도로가 6 피트이상 긴 경우에는, 34에서 38인치 높이의 난간이 있어야 하며, 이 난간은 적어도 36인치 정도의 사이를 댄 탄탄한 것이어야 합니다.

출입구

- 업소의 문은 적어도 32인치의 폭이어야 하며 손잡이가 있는문의 옆벽 은 적어도 18인치이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 문의 손잡이는 높이가 48인치 이상이면 안되고 손잡이를 잡아당겨야 하거나 회전 시키는것이면 않습니다. (이경우는 손가락을 쓸수 없는 장애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문지방의 높이는 1/4 인치 이상이면 안되고 만일 양옆으로 경사면을 설치하실 경우 높이는 1/2 인치 이상이면 않습니다.
- 문을 여는데 있어서, 8.5 파운드 이하의 힘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문이 닫히는데 있어서 적어도 3초 이상은 걸려야 합니다.

업소내의 환경과 복권상품이 설치된 곳의 환경

- 업소내는 적어도 36인치 넓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업소내에서는 휠체어가 다닐수 있고 회전이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직경 5 피트 정도의 공간이나 T 자 모양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 카운터의 높이는 36인치 이상이면 않습니다. 그러나 여유치 않을 때에는 차선택으로 장애자가 글씨를 쓸수 있도록 필기용의 딱딱한 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종합

- 만일 장애가가 이용할수 없는 출입구인 경우에는 장애자가 이용할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의 출입구의 위치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업소내에 진열된 물건중에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에 나와있는 경우에는 지팡이를 짚은 맹인이 감지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감지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진열품이 바닥에서 27인치 이내에 있거나 혹은 머리위에 진열하신 물품이 80인치 이상 높이에 있어서 머리가 부딪치기 않도록해야 합니다. 물품을 벽에 붙여서 진열하실 경우 벽에서부터 4인치 이상 나와서는 않습니다.
- 문앞에 깔아놓은 작은 신발 휴털개 (Doormat) 이나 카펫은 1/2 인치 혹은 그보다 낮은 높이로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불상사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